

1. 학칙 시행세칙

제정 : 2000. 09. 01

개정 : 2026. 04. 03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정보대학원 학칙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업연한)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계약학과 학생의 수업연한은 최단 2년(4학기)으로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 단축할 수 있다.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은 4년(8학기), 박사학위과정과 계약학과 박사학위과정은 7년(14학기), 통합과정과 계약학과 통합과정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제 2 장 교과 이수요건 및 수강신청

제3조 (이수학점)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과정 36학점, 박사과정 54학점, 통합과정 54학점으로 하며, 이 54학점에는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30학점까지 가산할 수 있다. 계약학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 제5조 및 제5조의 1에 따른다.

제4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학위과정별로 매학기 13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학사운영 필요에 따라 13학점을 초과할 수 있다.

제4조의2 (지도교수) 본 대학원에서는 학생이 졸업 때까지 제반 학사업무에 대하여 상담과 지도를 위한 학사지도교수를 배정하고, 학위논문 등의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입학생으로부터 <정보대학원 희망 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희망

지도교수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본 대학원 전임교수 가운데 학사지도교수를 배정한다.

2. 학위논문 등의 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두며, 대상자로부터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원장이 본 대학원 전임교수 가운데 배정한다.
3. 연구주제가 정보대학원 전임교수의 전공분야와 무관한 경우, <정보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본 대학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청강제도) 학생은 매학기 학점 없이 2과목까지 청강할 수 있으며, 청강 과목은 수강신청서에 기재하고 성적평가는 ‘이수필’(Pass:P)과 ‘이수미필’(Non Pass: NP)로 평가하여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6조 (학점인정) ① 본 대학원 입학 후에 본 대학원에서 개설하지 않는 과목을 본교 일반대학원 및 다른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이수하며, 본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매학기 6학점 이내, 총 15학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마치고 석사과정에 입학했을 때에는 이미 이수한 교과과목 중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고 9학점을 인정하며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원에 입학한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과목 중 B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박사과정주임교수의 확인과 부원장 심사 및 원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 정보대학원 석사 일반과정 및 계약학과: 30학점

- 기타 석사 과정: 24학점. 단 전공 일치도를 감안하여 학사지도교수와 협의를 거쳐 박사과정 주임교수가 24학점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원 입학 전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 또는 본 대학원의 동일한 학위과정(석사-석사, 박사-박사)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보대학원 해당 학위 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지도교수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할 수 있다. 단,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7조 (유급) 매학기 소정의 학점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유급을 한다.

제8조 (수강신청) ①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이수할 교과과목을 선택하여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변경기간 이후 학생은 수강신청 결과를 학사지도교수에게 제출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추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제적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의2 (교원 자녀의 수강신청) ① 정보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본 대학원 과목 수강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수강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수강과목변경) 이미 수강신청 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 변경, 폐강된 과목,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초 일정 기간 내에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과목철회) ①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 학사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그 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수강과목 철회후의 잔여 신청과목은 최저 1과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에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

④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나, 학적부상에는 'W'(Withdraw)로 기재한다.

제11조 (재수강제도) ① 성적평가가 C⁻ 이하 나온 과목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재수강한 과목의 경우는 성적평가에 재수강 표시를 하며, 이전에 평가된 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된다.

제12조 (폐강) 원장은 개설된 교과과목 중 수강신청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그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제12조의2(통합과정 진학평가 신청 및 심의) ①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학기 재학 중 정보대학원이 지정한 기간에 <통합과정 박사진학 평가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진학평가는 학칙 제22조의2에 따라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③진학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제출기한·평가자료의 범위 및 기타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3(이수 요건) ①본 대학원의 이수 교과목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

② 본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공트랙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학칙 제3조 제3호의 계약학과의 이수 요건은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로 따로 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 아래 각 목별 최소이수학점을 필수로 36학점 이상 취득

가. 공통필수 1과목(3학점)

나. 전공필수 3과목(9학점)

다. 전공심화 5과목(15학점)

라. 일반선택 3과목(9학점)

마. 졸업논문

2. 석사학위과정(맞춤형 융합) : 아래 각 목별 최소이수학점을 필수로 36학점 이상 취득

가. 공통필수 1과목(3학점)

나. 트랙맞춤(정보대학원 개설) 6과목(18학점)

다. 트랙맞춤(연관대학원 개설) 5과목(15학점)

라. 졸업논문

3.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 : 아래 각 목별 최소이수학점을 필수로 54학점 이상 취득

가. 공통필수 1과목(3학점)

나. 연구방법론 3과목(9학점)

다. 세미나 4과목(12학점)

라. 전공필수 3과목(9학점)

마. 전공심화 4과목(12학점)

바. 부전공 3과목(9학점)

사. 박사학위과정 생을 위한 연구과목인 Independent Study1,2는 각 종별로 최대 1과목만 적용하며, 종별선택에서 '필수과목'으로의 선택은

금지

아. 졸업논문

제12조의4(교과목위원회) <삭제>

제 3 장 학업성적 및 출석

제13조 (시험) 시험은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4조 (학업성적) 매 학기의 정기시험에 있어서 수강과목 성적이 C⁻이상의 학점만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과정수료 및 졸업사정에 있어서는 전 이수과목이 평균 B⁰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 (성적등급·평점)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점수	설명
A ⁺	4.3	100 ~ 97	우수
A ⁰	4.0	96 ~ 94	
A ⁻	3.7	93 ~ 90	
B ⁺	3.3	89 ~ 87	우량
B ⁰	3.0	86 ~ 84	
B ⁻	2.7	83 ~ 80	
C ⁺	2.3	79 ~ 77	양호
C ⁰	2.0	76 ~ 74	
C ⁻	1.7	73 ~ 70	
F	0	69 이하	불량
W	0		Withdraw
P, NP	0		청강, 연구

제15조의 2 (교원 자녀 시험 및 성적평가 관리) 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의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교원이 시험을 관리·감독하도록 한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성적부여 시 출석, 과제, 시험 등 성적산출 근거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담당교수가 제출한 성적산출 근거자료는 행정팀에

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8조의 2 및 본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교원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으며, 공정성에 현저하게 위반되는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제16조 (출석일수)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1/3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성적과 상관없이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시험 불응신고 및 추가시험

제17조 (시험불응신고) 정기시험을 사고로 인하여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불응신고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불응사유서) 시험불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병으로 응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한다.
2. 입대 및 병무소집 관계로 응시하지 못한 자는 소집영장 또는 입대 확인서 사본을 첨부한다.
3. 직계가족 사망으로 불응한 자는 사망진단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불응한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제19조 (추가시험) 불응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에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의2(성적정정) ①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 등 성적정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학기 성적확인 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담당교수가 사유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와 기타 증빙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성적 정정원을 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성적정정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성적의 정정을 허가한다.

제19조의3(성적정정 제한) 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인(평가자, 수강학생 등)을 출석시켜 의견 및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의4(성적평가 자료의 보관)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는 성적평가에 대한 근거자료를 최소한 5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성적의 취소) ① 원장은 학생이 취득한 성적이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성적을 취소하고 당해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② 해당 학생이 이미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1항에 의한 학점의 취소로 인해 졸업이수학점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 5 장 편입학자의 학기 및 학점

제20조 (학기·학점인정) 편입학한 학생의 학기와 학점의 인정은 교수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원장이 결정한다. 단, 편입학자의 취득학점은 18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최대 2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21조 (제출서류) 전조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편입학신청서
2. 편입 전 재학한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3. 기타 증빙서류

제 6 장 휴학, 퇴학, 제적, 복학 및 재입학

제22조 (일반휴학)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이 불가하며,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휴학사유서, 진단서 등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입대휴학) 군 입대로 인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신청서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휴학기간)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2년(4학기), 박사 3년(6학기), 통합과정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12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말한다.(단,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 연한(1년(2학기))에 산입하지 않으며, 자녀 1명당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제25조 (휴학신청) 미등록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친 학생의 학기 중 휴학신청서의 제출은 학기 2/3선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제적)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1.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수업방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종합시험에 재 응시하여 불합격한 자
5. 재학연한 초과자
6. 계약학과 학생 중 협약산업체 등에서 자원퇴직한 자
7. 등록하고 수강신청 아니한 자

제28조 (자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신청서에 자퇴이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신청서, 청원서, 학업계획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입학전형 절차에 따라 심사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입학 심의는 서류심사와 필요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모든 재입학은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모든 재입학의 허가는 1회에 한한다.

④ <삭제>

제30조 (학기·등록금) ① 등록을 마친 학생의 등록금은 휴학 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② 중간시험 이후 학기2/3선 해당일로부터 입대 휴학한 학생에 한하여 당해 학기는 인정되며, 당해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시험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삭제

제 7 장 계약학과

제32조 (설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통합과정을 둔다.

제34조 (계약학과의 명칭 및 학위명) ① 계약학과로 “정보미디어전략”, “빅데이터”, “AI 핀테크”, “IBK AI 빅데이터”, “교보 AI 빅데이터”, “디지털포렌식” “경찰융합정보화”과정을 둔다.

② “정보미디어전략”, “빅데이터”, “AI 핀테크”, “IBK AI 빅데이터”, “교보 AI 빅데이터”, “디지털포렌식”, “경찰융합정보화”과정은 재교육형으로 운영한다.

③ 학위명은 정보시스템학석사(정보미디어전략), 정보시스템학석사(빅데이터), 정보시스템학 석사(AI 핀테크), 정보시스템학 석사(IBK AI 빅데이터), 정보시스템학 석사(교보 AI 빅데이터), 정보시스템학 석사(디지털포렌식), 정보시스템학 석사(경찰융합정보화), 정보시스템학 박사(빅데이터), 정보시스템학 박사(AI 핀테크), 로 한다.

제35조 (입학)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과 학업동의 및 지원을 확약 받은 자

제36조 (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요구 또는 의뢰하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7조 (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수인정에 관한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38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석사학위과정은 36학점(논문대체 시 35학점) 단, “정보미디어전략” 40학점(논문대체 시 39학점), “디지털포렌식” 33학점, 박사학위과정은 5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각 과정의 필수요건 규정에 충족한 자

제39조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0조 (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그 부담)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41조 (수업료 등 납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계약학과의 그 설치·운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책임 하에 관련 전공교수들이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계약학과 운영)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계약

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43조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 박사과정 요람 및 관례에 따른다.

제44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총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부원장, 주임교수,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으로 구성한다. 단, 산업체 및 학생위원이 전체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계약학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학과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45조(학업상황 통보)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6조, 제12조, 제15조, 제24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제3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22조, 제24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6조, 제8조, 제14조, 제29조)은 2005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세칙(제2조, 31조, 제 7장)은 2007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하며, 2008년 9월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IT경영전략 트랙 재학생은 계약 학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7.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24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세칙(제6조의 3)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세칙(제29조)은 2012년 9월 재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3조, 제6조, 제24조, 제29조)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세칙(제34조)은 2013년 9월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세칙(제34조)은 2014년 3월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빅데이터과정은 2014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세칙 (제2조, 제3조, 제34조, 제38조)은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 제24조, 제34조, 제38조제1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장 표제, 제4조의2 신설, 제6조 제3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제22조, 제29조 제4항 삭제,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제36조 제2항, 제42조의2 신설)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보며, 제12조의3 신설은 2015년 9월 입학생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7.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8조의 2 및 제15조의 2 신설)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3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5 신설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44조, 제45조)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2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0조, 제27조, 제34조, 제38조)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33조)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4조, 제38조)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6조 3항 및 4항)은 2022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4조)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6조 3항, 제12조의3 2항 1호 가목, 2호 가목, 3호 가목)은 2025년 3월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4조)은 202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7. (시행일) 이 세칙(제12조의 2, 제12조의 3의 ①, 제12조의 4)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

제정 : 2000. 03. 01

개정 : 2026. 04. 03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외국어시험

제2조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TOEFL, TOEIC, TEPS, IELTS, TOEIC Speaking, OPICs 성적표로 대체한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자체 어학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학과(재교육형)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성적제출) ① 입학전형 지원서 접수 시 일정 성적 이상의 TOEFL, TOEIC, TEPS, IELTS, TOEIC Speaking, OPICs 성적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시험 신청 이전에 해당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위 기간 내에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를 할 수 없다.

제4조 (자격기준)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외국어시험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석사 / 박사	
내국인	TOEFL	PBT	550
		CBT	213
		IBT	79
	TOEIC		730
	TEPS		315
	IELTS		6.5
	TOEIC Speaking		IM2
	OPICs		IM2
외국인	영어권	면제	
	비 영어권	내국인과 동일	

제5조 (유효기간) 외국어시험 성적표의 유효 기간은 제출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응시한 성적표에 한함.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 3 장 종합시험

제8조 (응시자격)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과정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재학생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통합과정 종합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재학생이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및 2차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2차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각 과정의 학생은 총평량평균이 3.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응시 기회는 각 과정별로 총 2회 부여한다.

제9조 (실시시기) 종합시험은 매학기 말에 실시하며,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1차 종합시험은 2학기말 이후에, 2차 종합시험은 4학기말 이후에, 통합과정 학생의 1차 종합시험은 3학기말 이후에, 2차 종합시험은 6학기말 이후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응시절차)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정의 응시원서를 소정 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험과목) 학위과정별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공통필수(연구방법론) 1과목, 전공필수 2과목, 전공심화 1과목 총 4과목 응시
2. 박사학위과정
 - 가. 1차 종합시험

- 1) 공통필수 : 연구방법론 1과목
 - 2) 전공필수 : 각 트랙별 전공필수 2과목 선택
 - 3) 전공심화 : 각 트랙별 전공심화 1과목 선택
- 나. 2차 종합시험
- 1) 전공 : 1과목
 - 2) 세미나 : 2과목
- 다. 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과 동일하다.
3. 계약학과 박사학위과정
- 가. 1차 종합시험
- 1) 공통필수 : 연구방법론 1과목
 - 2) 전공필수 : 각 트랙별 전공필수 3과목 선택
- 나. 2차 종합시험 : 박사학위과정과 동일하다.
- 다. 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과 동일하다.

제12조 (출제범위) ① 석사학위과정은 공통영역 및 전공 트랙영역에 대한 기초 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② 박사학위과정 1차 종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 및 부전공영역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③ 박사학위과정 2차 종합시험은 박사학위과정 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종합적 연구능력을 측정 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13조 (출제 및 채점) ①실제로 강의한 교수(외부교원 포함)가 문제 출제 및 채점을 한다. 실제 강의한 교수가 퇴직한 경우, 트랙 주임교수가 문제 출제 및 채점을 대신한다

②박사학위과정 2차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이 신청한 3과목에 대하여 1인의 교원이 출제와 채점을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합격기준) ① 종합시험은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모든 과목에 합격하여야만 논문심사 자격 요건을 갖는다.

②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1차 종합시험의 경우 공통과목에 한하여 본교 정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원생의 경우, 학사지도교수와 박사과정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1조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1차 해당과목의 취득 학점이 A⁰ 이상인 경우 과목별로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재 응시) ①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1차 종합시험의 경우, 총 4과목 중 2과목 이상 불합격되면 다음 학기 종합시험에 재 응시 하여야 한다. 다만 1과목 불합격되는 경우 2주 이내 에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결시자도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 2차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학기에 재 응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재 응시 하는 경우 불합격한 과목만 응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2조)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12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제8조, 제9조, 제11조의 다, 제12조의 ④, 제14조, 제15조)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3조, 제4조)은 재학생 전체 대상으로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세칙(제8조의1, 제11조)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1항,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5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1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1조)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2.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제4조)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경과조치) 이 규정(2.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제4조) 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1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8조, 제15조 ①항)은 2025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되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14. (시행일) 이 세칙(제11조, 제13조)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3. 학위논문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00. 03. 01

개정 : 2026. 05. 20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자
- 다. 정규등록 4학기를 필 한 자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정규등록 2학기 이상 필한 자)
- 라.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 완료 예정인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1·2차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나.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2학기 이상 연구 지도를 받은 자
- 다. 정규등록 4학기를 필 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 라.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본 심사 완료 예정인 자
- 마. 통합과정 : 동조 2호(박사학위과정)와 동일하며, 단, 정규등록은 6학기를 필하고, 본 심사는 8년 이내에 완료 예정인 자

제3조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국문으로 작성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각 학위논문의 성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학위논문 :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서술되어야 한다.
2. 박사학위과정 : 취급하는 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적 지식을 소지하고 있고 독자적 학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기존지식 또는 기술을 상당한 정도 수정 또는 확대하고 논지가 분명한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의 2 (통합과정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②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 (논문 작성법) <삭제>

제 2 장 논문지도 및 심사

제5조(논문지도교수 자격) 본 정보대학원의 관련분야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단, 본 대학원 전임교수 가운데 연구주제의 전공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원장의 제청과 원장의 승인 하에 본교의 관련분야 전임교수를 논문지도교수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 학기 초에 논문지도교수 배정신청서를 소정 기일 내에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지도교수결정)

- ① 부원장은 전조의 규정의 신청에 따라 논문지도교수를 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 원장은 제청된 논문지도교수를 확정하고 논문지도를 위촉한다.

제8조 (논문연구계획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배정통지가 되면 소정기일 내에 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제목변경) 전조의 연구계획서에 기재된 논문제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제목변경원’을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위원배정시기) 부원장은 논문제출자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을 때 논문심사위원을 원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기능) 원장은 제청된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논문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위촉한다.

제12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인 경우 3인, 박사학위논문인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③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는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의 2 (교원 자녀 논문 심사위원 관리) ①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본인의 자녀가 작성한 학위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원은 사전에 부원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장)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심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기타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제 3 장 학위논문제출

제14조 (학위논문체제) 일반대학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논문편제) 논문편제 및 서술방식은 연세대학교 논문작성법 편찬위원회

편, "연세대학교 대학원 새논문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제16조 <삭제>

제 4 장 학위논문 예비심사

제17조 (심사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예비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부, 박사학위 과정은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 이후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한다.

제18조 (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학술발표회를 통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의 의견을 통합하여 소정기일 내에 예비심사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심사판정) ① 논문예비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취급방법의 타당성, 연구 성과 등을 엄밀히 심사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② 논문이 부실하여 당해 학기 내에 완성 가능성이 없다고 판정할 때에는 논문의 본심사를 1학기 이상 연기할 수 있다.

③ 판정은 가, 부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인쇄) 논문예비심사를 통과한 논문제출자는 지적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한 후 지도교수로부터 인쇄회부 승인을 받아 논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제 5 장 학위논문 본심사

제21조 (본심사 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작성자는 본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

은 3부, 박사학위과정은 5부의 원고를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일 이후에 행정팀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 학기에 심사한다.

③ 입학일 이후부터 본심사 논문제출 전까지 S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로 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확정 또는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하는 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목록 중 인정등급 IF 4, 3(각각 정보대학원 국제학술지 등급 1A, 1B)에 해당하는 학술대회에서 regular 논문 발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 제1저자의 경우, 1/(공동 제1저자 수)편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제22조 (본심사) ① 학위논문의 본심사를 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심사위원이 행한다.

② 논문을 제출한 학생이 전항에서 정한 시간에 심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동의하에 추후에 심사할 수 있으나,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위논문의 심사 상 필요할 때에는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부분, 역본 또는 모형, 기타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 본심사는 논문의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내용과 체제상 학위논문으로서의 결함이 있는가를 판정한다.

⑤ 학위논문의 본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 (논문평가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 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한다.

제24조 (구두시험) ① 논문제출자에 대하여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의 본심사와 병행하여 논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두시험을 행한다.

② 구두시험의 평가방법은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1학기 이상 경과 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 (학위논문 제출 방법) 학위논문 인준을 받은 학생은 본교의 학위논문 제출 절차에 따라 완성된 학위논문 및 표절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 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제3조의 2)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다)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제3조의 2)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2호, 제3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4항, 제22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1조 제3항은 2018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5조 제1호 다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2조의 2)은 2019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1조 3항)은 2025년 3월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12조의 1항)은 2026년 3월 1일(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1조 3항)은 2025학년도 2학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하다.
10. (시행일) 이 세칙(제14조, 제26조)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5.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 2000. 03. 01

개정 : 2026. 01. 30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학칙 제28조에 관한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가. 석사학위과정

1.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 자
3.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단,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논문 연구지도를 받은 자)
5. 논문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6. <삭제>
7. <삭제>

나. 박사학위과정

1. 학칙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54학점 이상)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 자
3. 졸업자격시험(외국어시험, 1차·2차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필 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5. 논문의 본심사 및 최종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
6. <삭제>
7. 학위논문 본심사 제출 전SSCI, SCIE에 주저자(제1저자)로1편 이상 게재하거나 게재 확정된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하는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목록 중 인정등급IF 4, 3(각각 정보대학원 국제학술지 등급 1A, 1B)에 해당하는 학술대회에서regular 논문을 발표한 자 단,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에 한한다. 공동 제1저자의 경우, 1/(공동 제1저자 수)편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다. 통합과정 : 동조 나호(박사학위과정)와 동일하며, 단, 정규등록은 6학기를
필하여야 함.

제3조 (학위수여자 사정) 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
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4조 (학위수여)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
에게 본 대학원학칙 제28조에 명시된 대로 과정별 세부전공 명칭의 학위를 수
여한다.

제5조 (보고) <폐지>

제6조 (학위수여 시기 및 횟수) 학위수여의 시기는 연 2회로 한다.

제7조 (명예박사학위) <삭제>

제8조 (학위기 양식) 우리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의 학위
기 양식은 다음과 같다.

※ 도해참조

<국문>

제 000 호



Master's Degree

학 위 기

김 연 세 0000년 00월 00일 생

정보시스템학석사 / 정보보호

학위등록번호:정보대학원(석)000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증서를 수여함

0000년 00월 00일

정보대학원장 ○ ○ ○

총장 ○ ○ ○

YONSEI UNIVERSITY



<영문>

No. 000



Master's Degree

*upon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hereby confers upon*

KIM, YONSEI

*in recognition of the satisfactory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the degree of*

**M.S. in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Security & Privacy**

with all the honou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Seoul, Korea

on the 000 day of 000

in the Year of Our Lord 000

0 0 0, Ph.D.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0 0 0, Ph.D.
President

YONSEI UNIVERSITY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세칙(제2조, 제4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7년 10월 18일부로 시행하며, 2008년 9월 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현재 IT경영전략 트랙 재학생은 계약학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6.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은 2009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7. (경과규정) 본 세칙 중 제2조 가, 항 7호는 시행일 이전 재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세칙 제 2조 나, 항 7호는 2011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9.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다)은 2013년 3월 입학생부터 시행 및 적용한다.
10.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가항 7호 <삭제>은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경과규정) 2013년 1학기에는 석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자의 종합시험 응시와 논문지도의 병행을 허용한다.
11. (시행일) 이 세칙(제2조의 가항 1호, 나항 2호)은 2014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3조, 제4조 및 제7조)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 나항 제7호는 2018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제1호 라목)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1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가항 1호, 나항 2호)은 2025년 3월부터 시행 하되 시행일 이전 입학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나항 7호)은 2025년 3월부터 적용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제2조 나항 7호)은 2025학년도 2학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하다.

정보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

제정 : 2002. 3. 1.

개정 : 2026. 4. 3.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국가기관 또는 교외 인사나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지급 기준 및 금액 결정) ①각종 장학금의 지급 기본방향,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각종 장학금의 지급금액 및 예산 배분 기준(장학금별 금액, 인원, 상·하한 등 포함)은 교수회의에서 매학기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기능) <삭제>

제5조 (장학금 지급기간 및 중복수혜) ①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대학원에서 관장하는 장학금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서 해당 장학금 지급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신청자격) <삭제>

제8조 (선발기준) ①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은 학업성적, 학업능력 및 태도, 수혜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장학생의 세부 선발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③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휴학하거나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복학 시 장학금이 승계되지 않는다.

제 2 장 대학원 장학금

제9조(장학금의 종류) 대학원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장학금
2. 근로장학금(조교장학금)
3. 특별장학금
4. 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5. 연세동행장학금

제10조 (연구장학금)①연구장학금은 대학원의 교육·연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성적우수 장학금 등 기존 장학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연구장학금의 지급대상, 배분원칙, 선정절차 및 지급기준은 교수회의에서 매 학기 정한다.

제11조 (근로장학금(조교장학금)) ①조교 선발은 전체교수와 협의하여 원장이 매 학기 초에 결정한다.

②근로장학금(조교장학금)의 인원 배정은 매 학기별로 한다.

③조교로 선발된 자는 학기 중 대학원에서 정하는 근로(활동) 기준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행정팀 지원 업무 등 포함).

④근로(활동) 감독은 지도교수가 한다.

⑤근로장학금(조교장학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은 교수회의에서 매 학기 정한다.

제12조 (특별장학금) 대학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원생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국가기관 및 외부인사 또는 장학단체 장학금 등) 지급단체의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세동행장학금) 연세동행장학금은 대학(또는 본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장학제도로써,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중인 내국인 전일제 학생으로, 박사학위과정은 정규등록학기 (1~4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정규등록 4~6학기에 대학원에서 정한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은 폐지한다.
4. (시행일) 이 규정 (제8조의 4)은 2012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 (제5조 및 제11조)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규정(제14조)은 2025학년도 2학기 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14. 10. 25.

개정: 2026. 01. 30.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정보대학원의 계약학과(재교육형) “정보미디어전략과정”, “빅데이터과정”, “AI핀테크과정”, “IBK AI 빅데이터과정”, “교보 AI 빅데이터과정”, “디지털포렌식과정”, “경찰융합정보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자격) ① 정보대학원 학칙에 따른 학위과정별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산업체(상시근로자 5인 이상)등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② ①항의 추천서에는 학생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를 첨부하고 산업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는 학생의 교육비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6항에 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입학전형) 본 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구술시험을 면제할 수도 있다.

제4조 (등록 및 자격유지) ① 석사학위과정은 2년(4학기) 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음 4학기까지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의1 박사학위과정은 처음 4학기까지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대학은 매학기 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 자격유지 조건을 확인한다. 학생이 협약한 산업체로부터 자의에 의해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한다.

제5조 (이수학점) 재교육형 계약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과정명	전공	영어	해외 연수	캡스톤프로젝트 또는 논문 작성 시		학점 계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프로젝트 과목 4학점	
정보미디어전략	32	P/NP	4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프로젝트 과목 4학점	40
				논문	논문 3학점	39
빅데이터	32	P/NP	-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프로젝트 과목 4학점	36
				논문	논문 3학점	35
AI핀테크	32	P/NP	-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프로젝트 과목 4학점	36
				논문	논문 3학점	35
AI핀테크	32	P/NP	-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프로젝트 과목 4학점	36
				논문	논문 3학점	35
교보 AI 빅데이터	32	P/NP	-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프로젝트 과목 4학점	36
				논문	논문 3학점	35
디지털포렌식	30	P/NP	-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프로젝트 과목 3학점	33
				논문	논문 3학점	33
경찰융합정보화	32	P/NP	-	캡스톤 프로젝트	캡스톤프로젝트 과목 4학점	<u>36</u>
				논문	논문 3학점	<u>35</u>

제5조의 1 (박사과정 이수학점) 재교육형 계약학과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5학점으로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학점인정은 정보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6조 ③항 및 ④항에 따른다.

① 빅데이터(통합과정 포함) : 아래 각 목별 최소이수학점을 필수로 55학점 이상 취득

1. 전공필수 34학점
2. 연구방법론 9학점 이상
3. 전공연구 6학점 이상
4. 세미나 6학점 이상

② AI핀테크(통합과정 포함) : 아래 각 목별 최소이수학점을 필수로 55학점 이상 취득

1. 전공필수 32학점
2. 연구방법론 3학점 이상
3. 세미나 9학점 이상
4. 전공선택 5학점 이상
5. 전공연구 6학점 이상

제6조 (해외연수)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보미디어전략과정은 년 1회의 해외연수를 시행한다. 이에 대해 과정별로 정해진 학점을 부여하며 과정별 주임교수가 성적을 평가한다. 단, 해외연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정별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연구과제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자격시험)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자격시험에 관한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외국어시험

가. 석사 및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은 정보대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수업을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정보대학원 학칙에 명시된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정보대학원 개설 영어수업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나. <삭제>

2. 종합시험

가. 석사과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박사과정(통합과정 포함)은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세칙」 제3장 종합시험에 따른다.

제8조 (학위논문) 학위논문에 대한 과정별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정		적용 내용	학점	적용 후 졸업학점
정보미디어전략		학위논문 선택	3	39
빅데이터	석사	학위논문 선택	3	35
	박사	학위논문 필수	0	55
AI 핀테크	석사	학위논문 선택	3	35
	박사	학위논문 필수	0	55
IBK AI 빅데이터	석사	학위논문 선택	3	35
교보 AI 빅데이터	석사	학위논문 선택	3	35
디지털포렌식	석사	학위논문 선택	3	33
경찰융합정보학	석사	학위논문 선택	3	35

제9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석사학위과정

가. 4학기 등록을 필하고 35학점 이상(정보미디어전략 과정은 39학점) 이수한 자. 단, 디지털포렌식과정은 3학기 등록을 필하고 33학점 이상 이수한 자
<후단 삭제>

나.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다. 학위논문(또는 캡스톤프로젝트 과목이수)심사에 최종 합격한 자

2. 박사학위과정

가.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학위논문 본심사 제출 전SSCI, SCIE 또는Scopus급에 주저자(제1저자)로1편이상 게재하거나 게재 확정된 자 또는 한국연구재단이 발표하는CS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목록 중 인정등급IF 4, 3(각각 정보대학원 국제학술지 등급1A, 1B)에 해당하는 학술대회에서regular 논문을 발표한 자 단, 입학일 이후 게재한 논문에 한한다. 공동 제1저자의 경우, 1/(공동 제1저자 수)편으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제10조 (학위명)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다음 각 호의 전문학위를 수여한다.

1. 정보시스템학 석사(정보미디어전략) (M.S. in Information Systems, Information Media Strategy)
2. 삭제
3. 삭제
4. 정보시스템학 석사(빅데이터) (M.S. in Information Systems, Big Data Analytics)
5. 삭제
6. 정보시스템학 박사(빅데이터) (Ph.D. in Information Systems (Big Data Analytics)
7. 정보시스템학 석사(AI핀테크) (M.S. in Information Systems, AI and Fintech)
8. 정보시스템학 박사(AI핀테크) (Ph.D. in Information Systems, AI and Fintech)
9. 정보시스템학 석사(IBK AI 빅데이터) (M.S. in Information Systems, IBK AI and Big Data Analytics)
10. 정보시스템학 석사(교보 AI 빅데이터) (M.S. in Information Systems, Kyobo AI and Big Data Analytics)
11. 정보시스템학 석사(디지털포렌식) (M.S. in Informaton Systems, Digital Forensics)
12. 정보시스템학 석사(경찰융합정보화) (M.S. in Informaton Systems, Police Convergence Informatization)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와 제5조의1 신설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4.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1조, 제5조, 제5조의 1, 제7조, 제8조, 제10조)는 2021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5.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1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202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1조, 제5조, 제8조, 제10조)는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7.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9조의 2에 나항)는 2025학년도 2학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하다.
8.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의 1)는 2025학년도 2학기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하기로 하다.